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3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9월 9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3조의2는 동 조례의 적용 범위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”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등에 따르면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어 있는바, 안 제3조의2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으로 수정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의2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으로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의2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의2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 한다.	제3조의2(적용범위) ① -- -----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<u>서울특별시교 육청, 직속기관 및 교육 지원청에 설치하는</u> ---- -----.	제3조의2(적용범위) ① -- -----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<u>서울특별시교 육청에 설치하는</u> ----- -----.
1. 법령에 근거하여 구 성·운영하는 위원회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2. 조례에 근거하여 구 성·운영하는 위원회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3. 그 밖에 교육청이 필 요에 의해 구성·운 영하는 위원회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설치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 1.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 2.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 3. 그 밖에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 ② (생략)	제3조의2(적용범위) ① -----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설치하는-----. <삭제> <삭제> <삭제> ② (현행과 같음)